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 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시험명	시험방법	선발 예정			시 험 과 목
		직렬(직류)	직급	인원	
총계				30	
제1회 임용 시험	소계			30	
	공개 경쟁	교육행정	9급	20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교육행정 (장애인)	9급	1	
		교육행정 (저소득층)	9급	1	
		전 산	9급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 업 (일반전기)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식품위생	9급	1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시 설 (건축)	9급	3	1차: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차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도 폐지

- 행정직군의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행정학개론 과목 제외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 1형, 과목별 20문항)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시험시간	100분 (10:00 ~ 11:40)

나. 제3차 시험: 면접시험(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시험구분	계급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합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

-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충청북도 (구)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을 말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 응시자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여 그 기간동안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세대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면허)증 제한 [전산 직렬]

-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한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해야 함

시험명	구분	직렬	직류	직급	학력·자격증 등 제한	
제1회 임용 시험	공개 경쟁	전산	전산	9급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4.18.(월) 09:00 ~ 4.22.(금) 18:00 [취소마감일 : 4.25.(월) 18:00]	필기시험	5.30.(월)	6.18.(토)	7.11.(월)
		면접시험	7.11.(월)	7.25.(월)	8. 2.(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je.go.kr>) '행정마당' > 주요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 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2.12.31.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s://edurecruit.sje.go.kr>)에서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포함한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sje.go.kr>)

→ 「교직원 온라인 채용」 → 「지방공무원채용」에서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 시간대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오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접수 시작일 09: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접수 마감일 18:00

나. 응시수수료: 9급 5,000원

다.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지원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교육행정 저소득'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는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아도 응시원서가 접수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 사진파일: 3.5cm×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수험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표 출력·지참

- 응시표는 **2022. 5. 27.(금) 10:00 ~ 6. 18.(토) 10:00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 유의사항

- 【수정·취소】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 접수 취소는 **2022. 4. 25.(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단, 가산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중복접수 불가】** 본 공고문 내의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접수 확인】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접수번호가 기재되었으면 정상처리 된 것임)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 응시자 과실로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PC환경】**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가산점 적용은 매과목 40%이상 득점 시 적용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

나. 취업지원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아래표에 제시한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해당분야 응시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는 제외)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호사	5%
공업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5%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3%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가산 비율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5%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3%
시설	건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5%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 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3%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5% 또는 10%)을,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증서번호와 가산비율(3% 또는 5%)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자격증 가산점수는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1개만 인정됩니다.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가. 적용직렬: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수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장애인 ·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해당직렬: 교육행정(장애인), 교육행정(저소득층)

나. 실시방법: 필기시험에서 교육행정(일반모집)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 나.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
-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가 합격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함
-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함
-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마. 기타 사항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함
- 응시결격 및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됨
-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제 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직급	과목수	위탁출제 대상과목(공개)
9급 공채	11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탁출제 하지 않는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하며,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등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지 배부 후에는 시험실 입실이 불가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고,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하며,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점 적용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및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은 취소됩니다.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OMR카드 판독 점수를 원점수로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간 안내나 시험실 내 시계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 문자 송·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 시계 등은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전출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타 시·도 등 전출 제한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 접수기간: 4. 18.(월) 09:00 ~ 4. 22.(금) 18:00까지**
-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실시 예정이며, 사전공개 일정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044-320-3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제 폐지
 -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과목 제외**
 - 일반행정,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 제외**
- 기술계고등학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출제기관 및 일정 조정
 - 필기시험의 일부 과목은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되며, 시험일이 하반기로 조정됨

□ 2023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기술계 고졸(예정)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
 - (현행)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 (변경)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